

## FSS/2112-16 :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2.1.1.~2012.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가 흡수합병한 B사는 ‘12년 중 회사의 연결 대상자회사 C사에 1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대여하였다. B사는 ’12년 중 회사와의 합병 및 IFRS 전환 이슈 등으로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C사에 대한 대여금 전액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손상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와 합병한 이후에 C사에 신규로 50억원을 대여하였고 ‘12년말 동 신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연결대상자회사인 C사는 ’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및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였고, 회사로부터 새로 자금지원을 받아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회사의 자금 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회사는 C사에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손충당금 50억원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C사가 완전자본잠식 및 연속손실시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의무자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대여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40(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1 및 문단2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재무제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함에 있어서 의도적인 재무보고의 왜곡 또는 자산의 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대여금에 대한 손상검토를 하면서 계약서 검토를 누락하여, 계약서도 없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여금 회수활동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취급·상환내역을 검토하지 않아 새로운 대출금으로 과거 대출금을 대환하여 손실을 이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인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성격의 파악보다는 대출금 총액 대비 기존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계정 단위에서의 분석적 접근만으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부정에 관한 별도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5. 시사점

감사인은 자금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적 검토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